

FTA BRIEF

신통상 환경과 원산지관리의 확장
: 특혜·비특혜 통합 관리의 필요성

Vol. 04
JUNE 2026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활용연구

FTA 활용률 통계 산출
FTA 관세율 정보 제공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연구

FTA 협상 지원
FTA 정책 지원정보
원산지 규정 분석 및 해석

신통상규제 연구

수출입 규제 수집 분석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국제통상 정책 동향 수집 분석

FTA·원산지 연구

관세청 FTA
이행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원산지검증 지원

국내·외 품목·산업 동향 수집 분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인증수출자 인증 예비조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FTA 전문인력 양성

FTA 활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문자격제도 운영 및 도서발간



* 사진 출처 : Freepik

미국 정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 (2026.06.01)

- ☑ 미국 정부는 2026년 6월 1일(현지 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 포고령 발표에 따른 개편 결과,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제232조 관세율이 15%로 인하된다.
 - 추가로, 농업용 장비 및 공조 설비 등의 관세율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조치는 한시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관세 인하 대상 국가: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EU 회원국

- ☑ 또한, 외국산 물품에 미국산 금속(철강·알루미늄·구리)이 중량 기준 요건이 완화되었다.
 - 기존 미국산 금속이 95% 이상 사용된 경우 10%의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2026년 6월 개정으로 인해 85% 이상 사용 요건만 충족하여도 우대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 현황 및 구조(2026년 6월 기준)	
주요 적용 품목	목재(HS 44류), 철강(HS 72류, 73류), 구리(HS 74류), 알루미늄(HS 76류), 반도체(HS 84류, 85류), 자동차-부품(HS 87류) 등
현황 한국산 세율 현황	50% : 철강·알루미늄·구리 본품 및 고비율 파생제품(Annex I-A) 25% : 철강·알루미늄·구리 일부 파생제품 (Annex I-B) / 중대형 차량-부품 / 특정 첨단 반도체 및 파생제품 15% : 한국산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전력망 장비(Annex III, ~2027.12.31.) / 농업-건설 장비 및 이동식 산업기계((Annex I-C ~ 2027 12.31) /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성분 10% : 연질목재-제재목 / 버스 면제 : Annex II 해당 품목 / 제네릭 의약품-바이오시밀러 등 특정 의약품
세율 구조	기본세율(또는 협정세율) + 제232조 품목별 추가 세율* *제232조 해당 품목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추가 세율 면제

신통상 환경과 원산지관리의 확장 : 특혜·비특혜 통합 관리의 필요성



[글_오윤진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장, 구지현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기업의 원산지 관리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이하 FTA) 활용을 위한 특혜 원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기업의 관리 역량 또한 특혜 원산지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주요국의 관세 조치 확대, 공급망 재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환경-공급망 규제 확산 등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관세 부과와 통상규제 적용 과정에서 원산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원산지 관리는 단순한 협정관세 활용을 넘어 대외 통상 리스크 대응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이 관리해야 할 원산지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혜 원산지가 FTA 협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판정되는 반면, 비특혜 원산지는 수입국의 법령과 판정 사례 등에 따라 결정된다.¹⁾ 이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라도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의 원산지 관리 범위 역시 특혜 원산지에서 비특혜 원산지까지 확대되고 있다.²⁾

실제로 2026년 3월 국내 수출기업 6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특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응답(60.9%)과 비특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응답(54.1%) 모두 과반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최근 1~2년간 대응이 필요했던 주요 통상 이슈로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특혜·비특혜 원산지 판정·검증을 꼽았다. 이처럼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수출기업 지원도 특혜와 비특혜 원산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관리에 대한 기업 인식의 변화와 애로 사항을 살펴보고, 특혜·비특혜 원산지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지원체계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표적으로 미국은 비특혜 원산지 판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CBP)의 사전심사(Ruling)와 관련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2) 예를 들어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특혜원산지는 한국으로 인정되더라도, 비특혜 원산지는 다른 국가로 판정될 수 있다.

2.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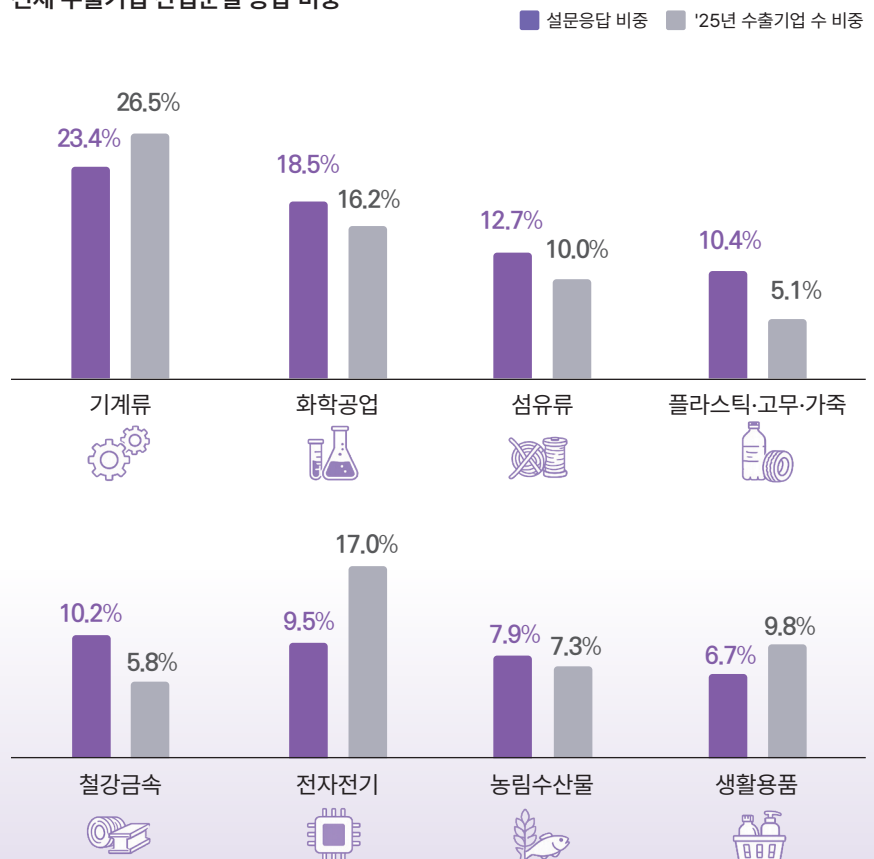


본 조사는 2026년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특혜·비특혜 원산지 관리 실태와 FTA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이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기획되었다.

설문 문항은 특혜·비특혜 원산지 관리 실태, 통상 이슈별 애로사항 및 관련 정보 플랫폼 이용 현황 등으로 구성하였다. 원산지 관리 영역은 판정 준비부터 증명서 발급, 사후관리까지 실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기존의 특혜 원산지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기업 인식과 단계별 애로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조사에는 국내 수출기업 총 675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612개사, 90.7%)을 차지하였고, 중견기업(53개사, 7.9%)과 대기업(10개사, 1.5%)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 응답 비중은 기계류(23.4%)가 가장 높았으며, 화학공업제품(18.5%), 섬유류(12.7%) 순으로 나타나 제조업 기반의 수출기업이 주요 응답층을 이루었다. 이러한 업종별 표본 비중은 2025년 기준, 국내 FTA 수출기업의 업종별 비중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응답 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역시 미국(20.1%), 중국(18.7%), 베트남(14.8%), 아세안(14.5%), EU(12.1%)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 전체 수출기업 산업군별 응답 비중



3. 원산지 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 애로



1) 특혜·비특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 인식 변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상환경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FTA 활용과 비특혜 원산지 관리 영역 모두에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통상 환경에서 특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답한 기업은 60.9%에 달한 반면, 중요성이 줄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특혜 원산지 관리 즉, FTA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사유로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수출시장 다변화, 비관세장벽 대응, 공급망 안정화가 뒤를 이었다. 이는 FTA 활용이 단순한 관세 절감을 넘어, 안정적인 시장 접근과 공급망 대응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특혜 원산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 역시 함께 높아졌다. 이전과 비교하여 중요성이 커졌다는 응답(54.1%)이 비슷하다는 응답(37.5%)을 크게 웃돌았다. 수입국의 통관 및 검증 단계에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요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관리해야 할 원산지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특혜 원산지 및 비특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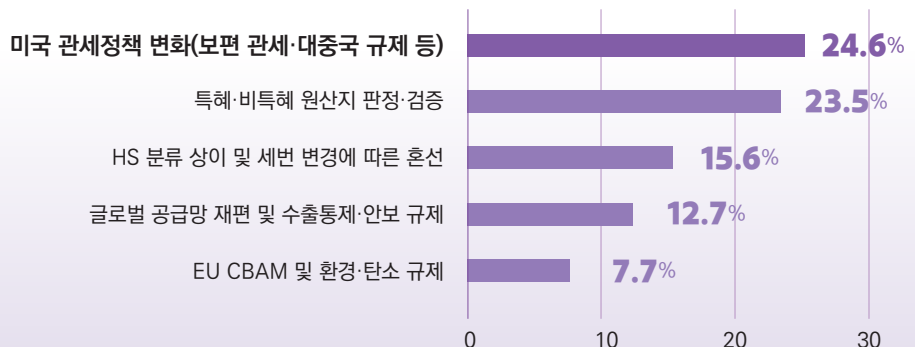
구분	중요해짐	이전과 비슷함	덜 중요·기타
특혜 원산지 관리	60.9%	36.7%	2.4%
비특혜 원산지 관리	54.1%	37.5%	8.4%

* 주 : '중요해짐'은 '특혜'의 경우 매우 중요해짐 18.4% + 중요해짐 42.5%, '비특혜'의 경우 매우 중요해짐 16.6% + 중요해짐 37.5% 기준.

이러한 인식 변화는 기업들이 실제로 경험한 통상 이슈와도 일치한다. 최근 1~2년간 대응이 필요했던 통상 이슈로 미국 관세정책 변화(24.6%)와 특혜 적용 및 비특혜 원산지 판정·검증(23.5%)이 최상위에 올랐으며, HS 품목 분류 상이 및 세번 변경에 따른 혼선(15.6%)이 그 뒤를 이었다.

● 최근 1~2년간 기업에게 영향을 미쳤거나 대응이 필요했던 통상 이슈 (TOP 5)

(순위별 선택: 1~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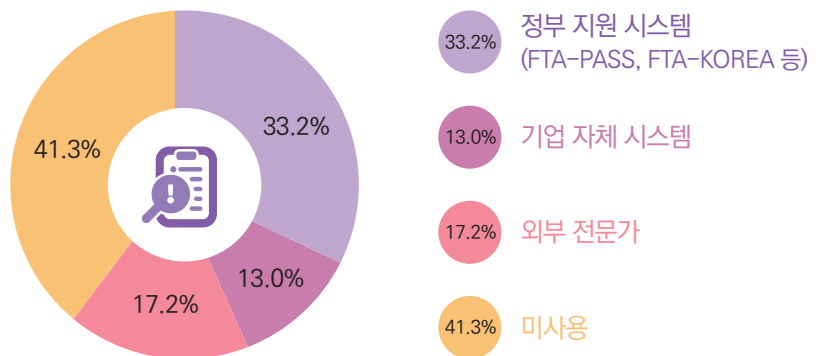


종합하면, FTA 특혜 관세의 가치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비특혜 원산지 관리가 기업의 새로운 실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두 영역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기업의 인력과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2)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의 대다수(77.5%)는 원산지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산지관리사·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22.5%에 불과했으며, 별도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기업 역시 41.3%에 달했다. 응답 기업의 대다수(90.7%)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수출기업은 제한된 인력과 인프라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게 되어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 없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원산지관리 시스템 이용 현황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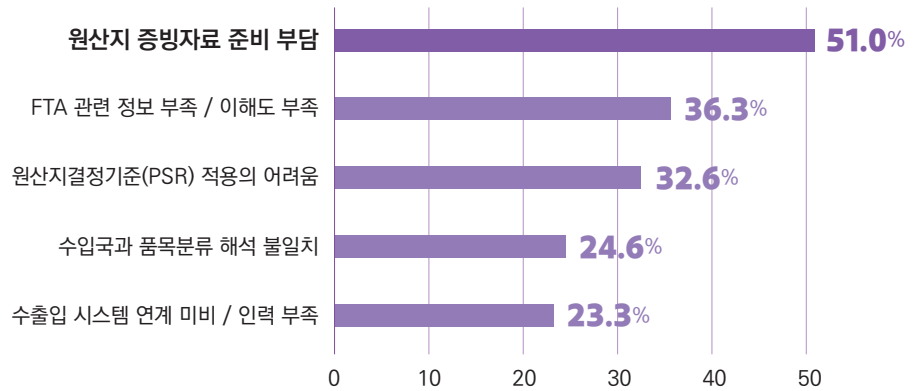
이러한 인력 및 인프라의 한계는 원산지 관리 업무 전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관리는 판정, 서류 준비, 증명서 발급, 사후관리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들은 각 단계에서 다양한 애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혜 원산지

특혜 원산지 활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는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51.0%)이었다. 이 항목은 서류 준비부터 발급 신청,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일관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FTA 관련 정보·이해 부족(36.3%), 원산지결정기준(PSR) 적용의 어려움(32.6%), 수입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불일치(24.6%) 순으로 애로사항 응답 비중이 높았다.

FTA 활용 과정의 주요 애로사항 (TO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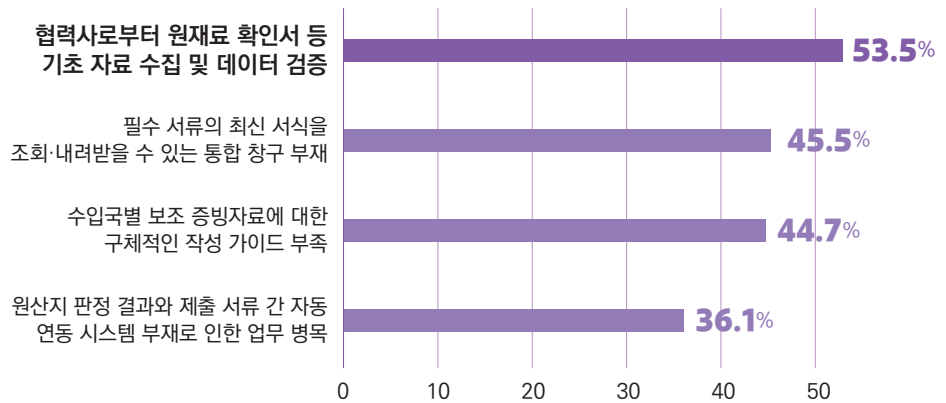
(복수 응답)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던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의 세부 애로요인을 살펴보면, 협력사로부터 원재료 확인서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어려움(53.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수 서류의 최신 서식을 한 곳에서 조화·활용할 수 있는 통합 창구의 부재(45.5%), 수입국별 보조 증빙자료 작성에 대한 어려움(44.7%), 원산지 판정 결과와 제출 서류 간 자동 연계 기능 부족 (36.1%) 등도 주요 애로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단계의 주요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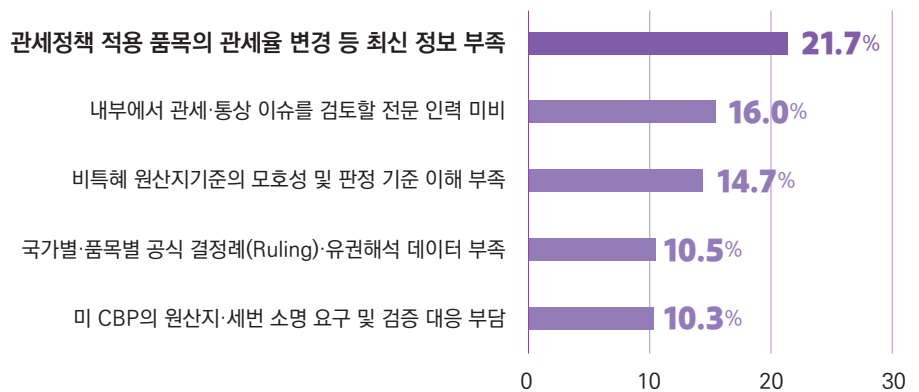
(복수 응답)



비특혜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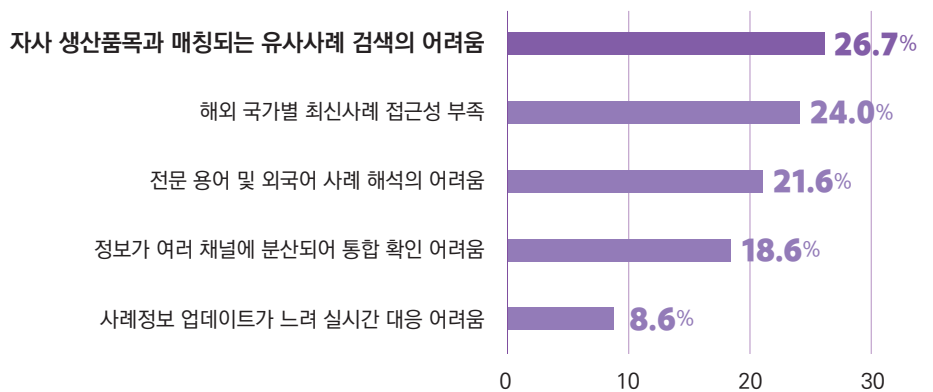
반면, 비특혜 원산지 관련 애로는 판정 기준 자체의 복잡성뿐 아니라 관련 정보와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최신 정보 부족 (21.7%)과 전문 인력 미비(16.0%)가 주요 애로로 조사되었으며,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모호성 및 판정 기준 이해 부족(14.7%), 국가별·품목별 결정례(Ruling) 및 유권해석 데이터 부족(10.5%),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세번 검증 대응 부담(10.3%)이 뒤를 이었다. 이는 기업들이 비특혜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미국 관세정책 변화 관련 주요 애로사항 (TOP 5) (복수 응답)



아울러 비특혜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사례와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자사 생산 품목과 매칭되는 유사 사례 검색의 어려움(2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 국가별 최신 사례 접근성 부족(24.0%), 전문 용어 및 외국어 사례 해석의 어려움(21.6%), 정보 채널 분산에 따른 통합 확인의 어려움(18.6%)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비특혜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사례와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 비특혜 원산지 및 품목분류 정보 수집 시 겪는 어려움 (TOP 5) (복수 응답)



4. 특혜·비특혜원산지 통합관리지원체계의 필요성과 기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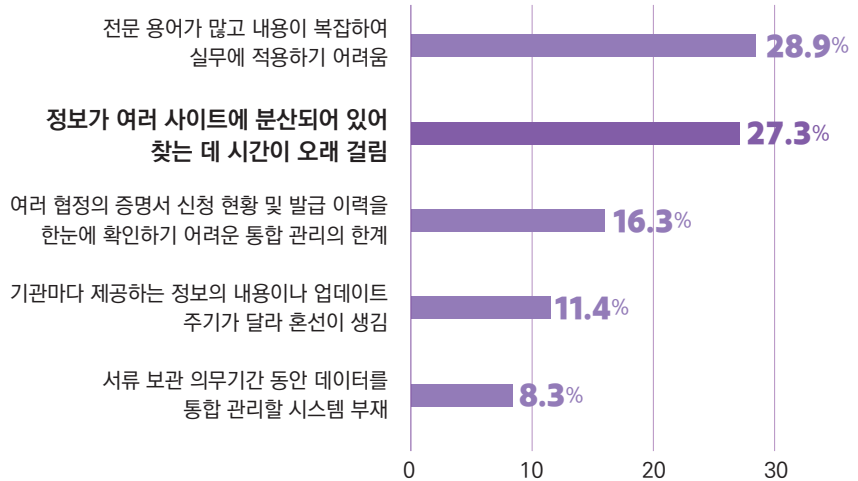
1) 분산된 정보 제공 체계와 현행 플랫폼의 한계

앞서 살펴본 특혜·비특혜 원산지 관리상의 애로는 자료 관리 부담, 정보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원산지 판정부터 서류 준비, 증명서 발급, 사후관리 까지 필요한 정보와 기능이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현행 지원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원산지 판정, 서류 준비, 증명서 발급 등 업무 단계별로 서로 다른 사이트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나의 수출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정보 채널과 업무 시스템을 오가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현행 플랫폼의 불편 사항으로는 전문 용어가 많아 실무 적용이 어렵다는 점(28.9%)과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27.3%)이 나란히 지적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원산지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보와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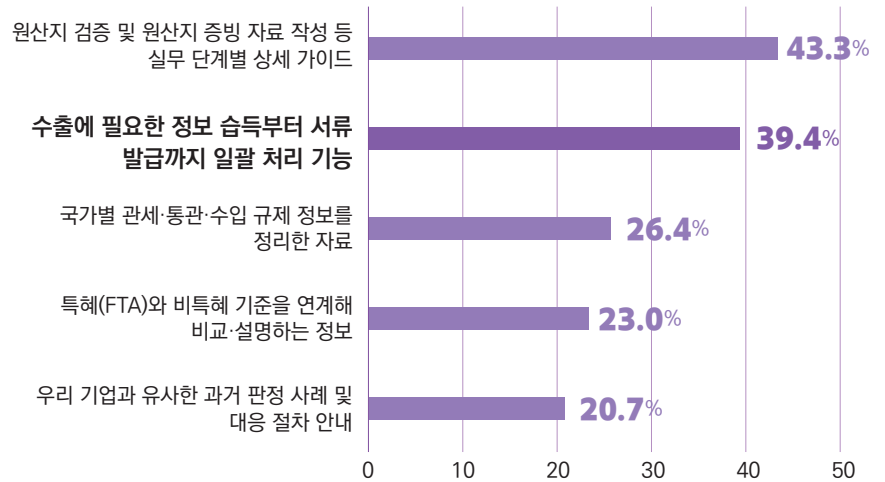
●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상정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함 (TOP 5)

(복수 응답)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보완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원산지 검증 및 증빙자료 작성 등 실무 단계별 상세 가이드(43.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 습득부터 서류 발급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39.4%)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국가별 관세·통관·수입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26.4%)와 특혜·비특혜 원산지 기준 관련 정보(23.0%)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무 단계별 가이드와 일괄 처리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점은, 기업들이 개별 정보를 단순히 제공받는 것을 넘어 원산지 업무 전 과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통합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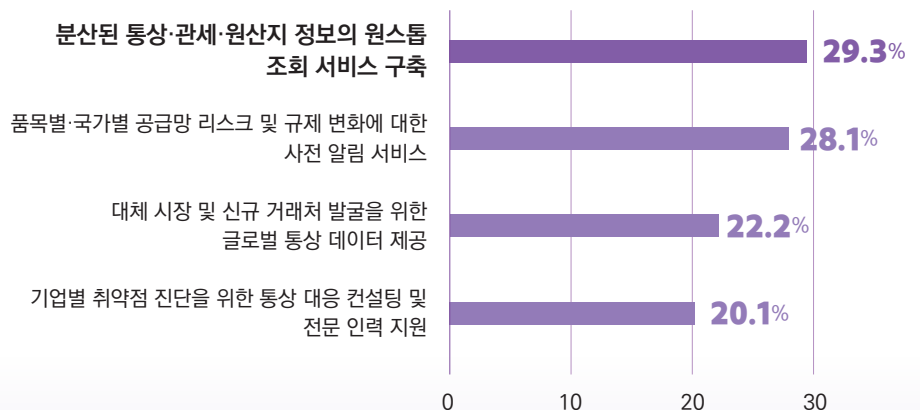
●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TOP 5) (복수 응답)



2) 통합 지원체계에 대한 기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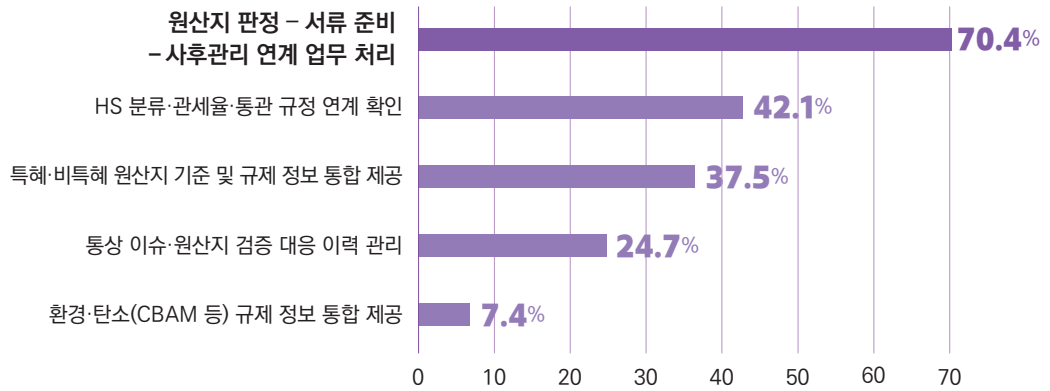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들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분산된 통상·관세·원산지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조회 서비스 구축(29.3%)과 품목별·국가별 규제 변화에 대한 사전 알림 서비스(28.1%)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또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82.5%에 달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실제로 통합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70.6%에 달했으며, 기존 시스템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에서도 수요가 확인되었다.

● 공급망 및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복수 응답)



기업들이 통합 지원체계에 기대하는 기능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통합 지원체계 구축 시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는 원산지 판정-서류 준비-사후관리 연계 업무 처리(70.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HS 분류·관세율·통관 규정의 연계 확인(42.1%), 특혜·비특혜 원산지 기준 및 규제 정보의 통합 제공(37.5%)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 ● 원산지(특혜·비특혜) 관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 시 가장 필요한 기능 (TOP 5) (복수 응답)



주관식 응답에서도 기업들의 요구는 실무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불편의 해소에 집중되었다. 특히 원산지 관련 정보와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히 새로운 플랫폼이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라 특혜·비특혜 원산지를 아우르는 정보와 기능을 연계·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는 향후 수출기업 지원이 특혜와 비특혜 원산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 주관식 응답]

“같은 물품이라도 FTA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가 다를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추가 관세·사후 추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비특혜 원산지까지 포함한 일원화된 원산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 **철강금속산업·중소기업**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실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품목별 상세 판례와 실제 통관 사례가 통합 제공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화학공업산업·중소기업**

“품목군별로 미국 CBP 룰링 사례를 번역해 조회할 수 있으면 실무 참고에 유용할 것이다.” ➡ **철강금속산업·중견기업**

“HS코드와 BOM을 입력하면 원산지가 자동 판정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 **기계류·중소기업**

5. 마무리하며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특혜 원산지 중심에서 특혜·비특혜 원산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FTA 활용을 위한 특혜 원산지 관리는 여전히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비특혜 원산지 관리 역시 기업이 대응해야 할 주요 과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여건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은 전문 인력과 관리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혜 원산지에서는 증빙자료 준비와 관리, 비특혜 원산지에서는 관련 정보 수집과 판정 기준의 모호성 등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관리 방식과 세부 애로요인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특혜와 비특혜 모두 관련 정보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나 시스템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업들은 분산된 원산지 정보를 통합하고, 원산지 판정부터 서류 준비와 사후관리까지 실무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향후 원산지 지원정책은 기존의 FTA 활용 지원을 넘어 특혜·비특혜 원산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 관련 정보와 기능을 연계하고 기업의 실무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



물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 773022 798002 03

ISSN 3022-7984